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202150		
등록번호	110111-2021501		
상 호	주식회사 다음소프트		변경 등기
			변경 등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0	2001.05.14 변경 2001.05.24 등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2	2008.03.02 변경 2008.03.06 등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8-21 석광빌딩 2층	2012.03.01 변경 2012.03.02 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1길 17, 신화빌딩 3층(한남동)	2017.10.20 변경 2017.10.31 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97(한남동)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한국경제에 게재한다		변경 등기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서울경제에 게재한다	2000.07.08 착오 발견
			2000.07.11 등기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daumsoft.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서울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2018.03.30 변경 2018.04.06 등기
1주의 금액	금 5,000 원		변경 등기
		금 500 원	2020.01.29 변경 2020.01.31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 주		변경 등기
		80,000,000 주	2018.03.30 변경 2018.04.06 등기
		800,000,000 주	2020.01.29 변경 2020.01.3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월일 등기 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200,000 주	금 1,000,000,000 원	변경
보통주식	200,000 주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50,000 주		2000.09.16 변경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09일 18시48분51초

등기번호	20215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250,000 주	금 1,250,000,000 원	2000.09.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59,720 주		2001.07.21 변경
보통주식	259,720 주	금 1,298,600,000 원	2001.07.23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19,720 주		2002.08.29 변경
보통주식	319,720 주	금 1,598,600,000 원	2002.08.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69,720 주		2005.06.14 변경
보통주식	369,720 주	금 1,848,600,000 원	2005.06.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397,406 주		2005.08.16 변경
보통주식	397,406 주	금 1,987,030,000 원	2005.08.2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37,141 주		2018.02.15 변경
보통주식	437,141 주	금 2,185,705,000 원	2018.02.1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49,960 주		2018.07.17 변경
보통주식	449,960 주	금 2,249,800,000 원	2018.07.1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2,467 주		2018.11.29 변경
보통주식	472,467 주	금 2,362,335,000 원	2018.11.29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24,670 주		2020.01.29 변경
보통주식	4,724,670 주	금 2,362,335,000 원	2020.01.31 등기

목 적			
1. 지능형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업			
2. 데이터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3.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업			
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0.10.06 삭제	2000.10.09	등기>
4.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	<2000.10.06 추가	2000.10.09	등기>
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0.10.06 추가	2000.10.09	등기>
	<2002.04.01 삭제	2002.04.08	등기>
5. 근로자 파견 사업	<2002.04.01 추가	2002.04.08	등기>
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2.04.01 변경	2002.04.08	등기>
	<2002.08.26 삭제	2002.08.29	등기>
6. 정보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사업	<2002.08.26 추가	2002.08.29	등기>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2.08.26 변경	2002.08.29	등기>
7. 전자상거래	<2005.03.28 추가	2005.04.11	등기>
8. 통신판매업	<2005.03.28 추가	2005.04.11	등기>
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5.03.28 변경	2005.04.11	등기>
9. 광고대행업	<2005.09.22 추가	2005.09.23	등기>
10. 광고물 제작	<2005.09.22 추가	2005.09.23	등기>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5.09.22 변경	2005.09.23	등기>
	<2005.10.31 삭제	2005.11.02	등기>
11.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2005.10.31 추가	2005.11.02	등기>
12. 이벤트업	<2005.10.31 추가	2005.11.02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09일 18시48분51초

등기번호	202150			
13.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5.10.31	추가	2005.11.02	등기>
13. 시장조사업	<2008.02.11	추가	2008.02.21	등기>
14. 도서출판업	<2008.02.11	추가	2008.02.21	등기>
15.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8.02.11	변경	2008.02.21	등기>
15. 컨설팅	<2009.03.31	추가	2009.04.06	등기>
16. 소프트웨어 임대사업	<2009.03.31	추가	2009.04.06	등기>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09.03.31	변경	2009.04.06	등기>
17. 연구개발 서비스업	<2013.06.10	추가	2013.06.24	등기>
1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13.06.10	변경	2013.06.24	등기>
	<2017.10.10	삭제	2017.10.31	등기>
18. 부동산 임대업	<2017.10.10	추가	2017.10.31	등기>
1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17.10.10	변경	2017.10.31	등기>
19. 정보통신 공사업	<2018.05.18	추가	2018.05.29	등기>
2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018.05.18	추가	2018.05.29	등기>
2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18.05.18	변경	2018.05.29	등기>
	<2019.03.29	삭제	2019.04.01	등기>
21. 증권정보제공업	<2019.03.29	추가	2019.04.01	등기>
22.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2019.03.29	추가	2019.04.01	등기>
23. 위 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	<2019.03.29	추가	2019.04.01	등기>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2019.03.29	추가	2019.04.01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원종필 690520-*****	2000년 07월 08일	취임	2000년 07월 08일	등기
	2003년 03월 11일	사임	2003년 03월 19일	등기
	2003년 03월 11일	취임	2003년 03월 19일	등기
	2006년 03월 11일	퇴임	2006년 03월 15일	등기
이사 김홍 690727-*****	2000년 07월 08일	취임	2000년 07월 08일	등기
	2001년 07월 01일	사임	2001년 07월 06일	등기
이사 한승연 691025-*****	2000년 07월 08일	취임	2000년 07월 08일	등기
	2001년 07월 01일	사임	2001년 07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원종필 서울 마포구 도화동 82 도화3지구 우성(아) 3-608	2000년 07월 08일	취임	2000년 07월 08일	등기
대표이사 원종필 690520-*****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4-3 대치삼성이파트 107동 1802호	2000년 10월 06일	주소변경	2000년 10월 14일	등기
	2001년 07월 01일	사임	2001년 07월 06일	등기
감사 조남익 670627-*****	2000년 07월 08일	취임	2000년 07월 08일	등기
	2003년 03월 11일	중임	2003년 03월 19일	등기
	2004년 03월 31일	사임	2004년 04월 08일	등기
이사 김경서 700801-*****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09일 18시48분51초

등기번호	202150						
2001년 07월 01일	취임	2001년 07월 06일	등기				
2004년 07월 01일	중임	2004년 07월 08일	등기				
2007년 07월 01일	중임	2007년 07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김경서 700801-*****							
2010년 07월 01일	중임	2010년 07월 05일	등기				
2013년 01월 31일	사임	2013년 02월 01일	등기				
이사 송길영 691010-*****							
2001년 07월 01일	취임	2001년 07월 06일	등기				
2004년 07월 01일	중임	2004년 07월 08일	등기				
2007년 07월 01일	중임	2007년 07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송길영 691010-*****							
2010년 07월 01일	중임	2010년 07월 05일	등기				
2013년 07월 01일	중임	2013년 07월 03일	등기				
2016년 07월 01일	중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9년 07월 01일	중임	2019년 07월 04일	등기				
2020년 03월 27일	사임	2020년 04월 09일	등기				
이사 송성환 671118-*****							
2001년 07월 01일	취임	2001년 07월 06일	등기				
2004년 07월 01일	중임	2004년 07월 08일	등기				
2007년 07월 01일	중임	2007년 07월 11일	등기				
사내이사 송성환 671118-*****							
2010년 07월 01일	중임	2010년 07월 05일	등기				
2013년 07월 01일	중임	2013년 07월 03일	등기				
2016년 07월 01일	중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9년 07월 01일	중임	2019년 07월 04일	등기				
대표이사 김경서 7008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33동 801호						
2001년 07월 01일	취임	2001년 07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김경서 70080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삼성아파트 109-1702						
2004년 03월 26일	주소변경	2004년 04월 08일	등기				
2004년 07월 01일	중임	2004년 07월 08일	등기				
2007년 07월 01일	중임	2007년 07월 11일	등기				
2010년 07월 01일	중임	2010년 07월 05일	등기				
2013년 01월 31일	사임	2013년 02월 01일	등기				
이사 전준서 670416-*****							
2003년 03월 11일	취임	2003년 03월 19일	등기				
2004년 01월 13일	사임	2004년 01월 13일	등기				
감사 김창준 701003-*****							
2004년 03월 31일	취임	2004년 04월 08일	등기				
2005년 03월 28일	사임	2005년 04월 11일	등기				
감사 강경원 731214-*****							
2005년 03월 28일	취임	2005년 04월 11일	등기				
2008년 03월 26일	중임	2008년 04월 04일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09일 18시48분51초

- 4/11 -

등기번호	202150					
2009년 12월 31일 사임	2010년 01월 13일 등기					
감사 이용직 710120-*****						
2009년 12월 31일 취임	2010년 01월 13일 등기					
2012년 03월 26일 중임	2012년 03월 30일 등기					
2013년 06월 10일 사임	2013년 06월 24일 등기					
사내이사 반승욱 660711-*****						
2013년 01월 31일 취임	2013년 02월 01일 등기					
2016년 03월 28일 중임	2016년 04월 06일 등기					
2018년 03월 31일 사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송성환 67111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802동 704호(죽전동, 내대지마을건영캐스빌)					
2013년 01월 31일 취임	2013년 02월 01일 등기					
2013년 07월 01일 중임	2013년 07월 03일 등기					
2016년 07월 01일 중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9년 07월 01일 중임	2019년 07월 04일 등기					
감사 최재원 710615-*****						
2013년 06월 10일 취임	2013년 06월 24일 등기					
2016년 03월 28일 중임	2016년 04월 06일 등기					
2018년 03월 30일 사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김경서 700801-*****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사외이사 채지훈 700504-*****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2020년 03월 27일 사임	2020년 04월 09일 등기					
감사 김경찬 711113-*****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2020년 03월 27일 사임	2020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윤준태 680914-*****						
2020년 03월 27일 취임	2020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김성연 830909-*****						
2020년 03월 27일 취임	2020년 04월 09일 등기					
사외이사 조성준 601202-*****						
2020년 03월 27일 취임	2020년 04월 09일 등기					
감사 박규상 810209-*****						
2020년 03월 27일 취임	2020년 04월 09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18년 07월 11일 변경 2018년 07월 18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회 전환사채 발행

1. ~~전환사채의 총액 : 금 1,300,000,000원~~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금 1,300,000,000원권 1매~~
 3.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금 1,300,000,000원~~
 4. ~~사채의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 본사채는 전환사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전환대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전환의 조건~~
 -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의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사 주식회사 다음 소프트 경영지원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2) ~~전환가액 : 금144,000원으로 한다.~~
 - 3) ~~전환가격의 조정 :~~
 - 가) ~~전환을 청구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분은 전환가액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만을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조정전전환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단 위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월말 현재의주식수로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사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01년 1월 29일 부터 2002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8. ~~납입일 완료한 날 : 2000년 12월 29일~~
~~< 2000 년 12 월 30 일 등기 >~~
~~2002년 12월 30일 제1회 전환사채 전부 상환~~
~~< 2003 년 01 월 02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2회 사모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 금 1,456,000,000원~~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금1,456,000,000원 1매~~

등기번호

202150

~~3.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4. 사채의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전환 사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전환대상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다.~~

~~5.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 100%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사 (주)다음소프트 경영지원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액 : 주당 금58,9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주당 액면 5,000원기준)~~

~~(다) 전환가액의 조정 :~~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분의 전환가액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일말 현재의 주식수로 하며, 조정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사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위의 산식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6.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다음소프트 기명식 보통주식~~

~~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02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29일까지~~

~~< 2003 년 01 월 02 일 등기 >~~

~~2004년 12월 30일 제2회 사모전환사채 전부상환~~

~~< 2005 년 04 월 11 일 등기 >~~

전 환 사 채

~~제3회 사모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 금 1,630,720,000원~~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 금1,630,720,000원 1매~~

~~3.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4. 사채의 주식전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전환 사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면액의 전액을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전환대상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번호

202150

5. 전환조건

(가)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을 100%를 전환가격으로 하는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의 교부사 (주)다음소프트 경영지원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나) 전환가액 : 주당 금58,9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주당 액면 5,000원기준)

(다) 전환가액의 조정 : 전환가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정하지 아니한다.

6.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다음소프트 기명식 보통주식

7.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5년 12월 29일까지

8. 납입이 완료한 날 : 2004년 12월 30일

< 2005 년 04 월 11 일 등기 >

제3회 전환사채

< 2005 년 08 월 16 일 전부주식전환 2005 년 08 월 24 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년 월 일 변경 2000 년 07 월 10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2003 년 03 월 11 일 변경 2003 년 03 월 19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이 회사는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회사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 2004 년 08 월 20 일 변경 2004 년 08 월 30 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202150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8 년 03 월 30 일 변경 2018 년 04 월 06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년 월 일 변경 2000 년 07 월 10 일 등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
 -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2003 년 03 월 11 일 변경 2003 년 03 월 19 일 등기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회사의 임.직원, 단,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제2항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
 -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각호의 자~~
 - 3) ~~대학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 각호의 연구기관~~

< 2004 년 08 월 20 일 변경 2004 년 08 월 30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로 한다. 단,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 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2018 년 03 월 30 일 변경 2018 년 04 월 06 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년 월 일 변경 2000 년 07 월 10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1)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8년 03월 30일 변경 2018년 04월 06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년 월 일 변경 2000년 07월 10일 등기 >~~

~~4. 주식매입선택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 2003년 03월 11일 변경 2003년 03월 19일 등기 >~~

~~4.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정년 기타 사망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본인 또는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04년 08월 20일 변경 2004년 08월 30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기타 사망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본인 또는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8년 03월 30일 변경 2018년 04월 06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년 월 일 변경 2000년 07월 10일 등기 >~~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